

채권법 4

-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.
- -> 특정물 도그마 이론: 특정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완전한 이행이 된다.
- 현재 다수설: 특정물채권의 경우 특정물이 이행기에 있어야 할 상태대로 이행해야 함

- -제462조 논의의 전제조건: 1. 목적물이 일부 훼손, 일부 멸실
- 2. 선관주의의무는 다했다.

- - 제462조의 논의: 특정물이 존재하는 한, 훼손 여부 또는 이행기의 전후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언제나 현상인도의무를 부담한다. 그렇다면 흠 있는 특정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현상인도로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됨

- - 새 자동차를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중고 인 경우 이로 인해 실제 가치를 8백만원 ->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
- 최근의 유력설은 설령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훼손으로 인해 불완전이행이다. 그러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아님. 무과실 책임은 하자담보책임

- 이러한 논의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론으로 연결됨
-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에 관해서는 특정물인도의 이행방법을 규정한 제46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를 중심으로 견해가 나뉨
- ① 법정책임설: 특정물도그마이론을 긍정하는 입장
- ② 채무불이행책임: 최근 유력설은 선과주의의무를 다했는지라도 특정물이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이고,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구제수단인 하자담보책임도 채무불이행책 임의 성질을 띤다.

- 종래 판례의 태도: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은 채부불이행책임임을 분명하게 하였으나(제569조), 그 밖의 경우에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음

-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유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**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**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, 이는 **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**
- (출처 :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1586 판결【손해배상(기)】 [2004.9.1.(209),1431])

- 종류채권
-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물 채권. 종류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정해짐

- 정육점에서 횡성한우 1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: 거래일반 관념이 아닌 당사자의 사에 따라 함
- 반면에 썰어놓은 횡성한우를 고른 경우는 당연히 특정물채권
- 동산거래는 대부분 종류채권이고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특정물채권